

忠州市議會 第140回 臨時會  
2009.09.18 (금) 11:00

#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③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심사경과

제안 제목	제안일자	제출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9.2	2009.9.2	2009.9.14	2009.9.14	총무과장
②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정과장
③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①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 및 충주시통합방위 예규에 따라서 협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른 소요예산의 지원  
(안 제3조의 2)

- 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다.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충주시장, 경찰서장, 육군 제3105부대 2대대장이 협약한 충주시통합방위 예규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안 제9조)

## ②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244호 (2009.6.10)]이 개정되어 지침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금고지정 기준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안 제4조)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조정(안 제5조)
  - 7인 이내 → 9인 이상 12인 이내
- 다. 금고약정체결기한 조정(안 제7조)
  - 10일 → 20일
- 마. 금고약정 중도해지 조항 정비(안 제8조)
  - 금고운영심의위원회 심사 조항 삭제

## ③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의 정책에 시유재산을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

- 행정재산 · 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대상 제조업체의 기준 완화(안 제28조제4항제6호)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 30명 이상
-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퍼센트 이상 → 30퍼센트 이상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안 제32조제3항 신설)

-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30 감면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27조, 안 제28조제4항제5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 제2조제1항제7호
- 영 제29조제1항제14호 → 제29조제1항제1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①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지원, 통합방위 종합 상황실의 설치,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상황실 운영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려는 사항임.

현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체계나 방법 등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음.

#### ②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2009년 6월 10일자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금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는 7명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9인 이상 12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하도록 하였고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의항목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코자 할 경우  
금고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곧바로 해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개정되는 각 조항별 검토결과,  
  
안 제4조 제2항의 삭제는  
조례에 정해놓은 금고선정 기준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은행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민의 편의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금고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원의 구성인원을 7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던 것을

9인이상 12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성토록 규모를 확대한 것은

위원 개개인의 영향력을 줄여 보다 공정하게 금고가 선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8조와 관련하여 금고약정을 중도해지 할 경우 현재는 금고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친 후 금고의 약정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시가 재정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의 고객인 입장에서 시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시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별표의 금고지정 기준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5점,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0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 등으로 배점되어 있던 것을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3점,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주민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26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자치단체와의 협력 5점 등으로 배점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배점 비중을  
높였음.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을 따르면서도 금고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중시하고자 함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일반회계의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특성에 맞게 금고를 선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③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의 변경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대부요율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묶어 행정재산으로 통칭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 1백분의 30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안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30% 감면토록 한 것임.

-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은 동 시행령 제31조에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시는 1천분의 50부터 1천분의 1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 대상을 달리하여 대부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지역에 신축하는 공장으로서 원자재의 50%를 충주시에서 조달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일반재산의 대부요율 1천분의 10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도 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금번에 원자재를 30%, 고용인원 30명으로 그 기준을 낮춰 신생기업을 유치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①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사태발생시 시민들이 대피장소를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방안은?  
○ 답변 : 방송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도록 하겠음.

##### ②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위원회 구성 규모를 확대한 이유는?  
○ 답변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랐음.  
▶ 질의 :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이유는?  
○ 답변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랐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음.  
▶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배점을 줄인 이유는?  
○ 답변 :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배점하였음.  
▶ 질의 : 지침이 바뀐 이유는?  
○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강화 하였음.

### **[3]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 **5. 심사결과**

- |   |        |
|---|--------|
| <b>[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 : 원안가결 |
| <b>[2]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 : 수정가결 |
| <b>[3]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                | : 원안가결 |

##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세부 심의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1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① 시장은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없이 금고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금고의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금고 지정기준) ①(생략)  <u>&lt; 신 설 &gt;</u></p> <p>제8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표준약정 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 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제4조(금고 지정기준) ①(개정안과 같음)  <u>②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세부 심의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8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①시장은 표준약정 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체 없이 금고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금고의 약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